

교수창업 지원규정

제정 2010.10.01.

개정 2012.03.01.

개정 2020.08.24.

개정 2023.07.0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학연계의 실질적 기반 구축 및 국가의 기술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하여 청강문화산업대학교(이하 “대학”) 소속 교수의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창업 및 이에 대한 참여를 촉진·지원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벤처기업”이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정하는 기업을 말한다.
- ②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 ③ “창업”이라 함은 대학 소속 교수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연구 성과를 활용하여 교내·외에서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설립(예비활동 포함)하는 ‘대표창업’과 대학 소속 교수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제3자의 창업에 지분참여와 함께 등기이사 등의 형태로 참여하는 ‘참여창업’을 포괄하여 말한다.
- ④ “교수”라 함은 본 대학에 소속한 전임 교수를 말한다.
- ⑤ “교수창업기업”이라 함은 대학 소속 교수의 창업에 의하여 설립한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창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학에 대하여 재정적 기여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재학생과 졸업생을 교수창업기업에 채용 혹은 참여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하여야 한다.

- ② 창업을 신청한 자는 창업승인일로부터 3년 내에 보유한 주식의 5%(단주는 1주로 처리한다.)를 산학협력단에 무상 증여하거나, 보유한 주식(액면가) 5%에 상응하는 기술료를 산학협력단에 납부한다. (단, 주식회사가 아닐 경우 3년 이내에 반드시 주식회사로 전환하여야 하며, 해당 주식 또는 기술료는 주식회사로 전환할 시 납부한다.)
- ③ 창업승인을 받은 자는 교수창업기업의 매 회계연도 마감 후 부가세확정 신고일 이후 1개월 이내에 교수창업기업 당기순이익의 5%의 기술료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산학협력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1. 교수창업 기업현황 [별지 제4호 서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전년도 과세표준증명 1부

④ 위 제2항에 명기된 기술료 납부 기준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협약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다.

제4조(신청자격) ① 교수창업을 할 수 있는 자는 대학에 3년 이상 근속한 전임교수 등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3년 미만 근속한 교수 중에서 교수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제2장 창업절차

제5조(허가신청 및 심사절차) ① 창업을 희망하는 교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수창업 허가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사업계획서 (3개년 추정재무제표, 창업대상 기술설명서 포함) 1부
3. 창업 시 대학에의 재정적 기여 계획서 1부
4. 스쿨 동의서 [별지 제2호 서식] 1부
5.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될 내용 각 1부

② 교수의 창업허가는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에서 그 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협약체결) 창업희망 교수는 승인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대학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① 창업대상 기술
- ② 창출된 부가가치의 일정분에 대한 주식매입 선택권 대학부여, 로열티 지불 등 환원계획
- ③ 기타 소속부서 업무공백의 보완 등 창업관련 필요사항

제7조(창업 시기) 대학과 창업협약을 체결한 교수는 협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창업하여야 한다.

제8조(겸직허가) 이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직하고자 하는 교수에 대하여는 교원복무규정 제5조의2의 절차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제9조(창업 및 겸직허가의 취소) 이 규정에 의하여 창업 및 겸직을 허가받은 교수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또한 대학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대학 제규정에 의거한다.

- ① 창업신청 관련 자료들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 ② 규제 제6조에 의한 협약을 소정의 기일 내에 체결하지 않는 경우
- ③ 규제 제6조에 의한 협약을 체결하고도 그 협약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④ 창업을 허가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 ⑤ 허가받은 사업내용과 현저히 다르게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⑥ 대학의 창업지원 사항을 악용 또는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학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 ⑦ 기타 총장이 창업 및 겸직허가를 취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0조(창업교수의 의무) ① 창업교수는 창업활동이 본교의 교육 및 연구활동에 미치는 유익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대학은 창업교수에게 교내 공간사용 등에 따른 비용을 대학이 정한 바에 따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③ 교내의 창업공간을 사용함에 있어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구조변경 및 위험물 반입 시에는 대학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창업교수는 창업기업에 채용되는 재학생 및 졸업생의 안전에 최우선 하여야 한다.

제11조(변경신고 및 보고) ① 창업교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2. 승인 받은 신청서상의 주요사업 내용 변경
3. 법인 전환
4. 사업자등록증상의 변경

② 제1항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신고서 [별지 제3호 서식] 1부
2. 변경된 계획서 및 사유서 각 1부
3. 기타 변경 신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각 1부

③ 창업교수는 허가기간 동안 당해기업의 기업현황 조사표와 재무제표를 매 회계연도 결산시점으로 부터 30일 이내에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한 주관부서는 산학협력단으로 하며, 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대학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2010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정은 201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③ 이 규정은 2020년 0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④ 이 규정은 2023년 0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이전의 교수창업에 참여 중인 교수는 이 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 규정 시행일 6개월 이내에 추인을 받은 후 위 제6조에 의한 협약을 대학과 체결하여야 한다.

- ② 이 규정은 교수창업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2호 서식]

스쿨 동의서

1. 겸직자

- 소속:
- 직명 및 직위:
- 성명:
- 생년월일:
- 전공분야:

2. 겸직사항

- 겸직기관:
- 직명 및 직급:

3. 겸직기간

- 겸직승인일로부터 #년간

아래 본인은 상기 교원이 ○○○○○○○○에서 위와 같이 겸직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스쿨 원장

(서명)

[별지 제3호 서식]

교수창업 변경신고				
신청자	소속			
	성명		E-Mail	
	전화번호		휴대전화	
변경구분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상호				
대표자				
사업내용				
법인전환				
사업자등록증상				
기타				
위와 같이 교수창업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총장				

[별지 제4호 서식]

교수창업 기업 현황 (####년도)			
기업명			대표자
설립일			고용인원 (대표자 제외)
주소			
업종			주요제품
자본금(원)	창업자본		매출액(원)
	대학지원		
	기타지원		
납부 기술료(원)			
주요 변경사항			
위와 같이 교수창업 기업 현황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총장			
※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전년도 과세표준증명 1부			

[별지 제5호 서식]

교수창업 협약서

※ 협약당사자

“갑”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총장

“을” 교수 (소속 스쿨)

교수창업(겸직) 승인에 따라 청강문화산업대학교(이하 “갑” 이라 한다)는 ○○○○스쿨 ○○○교수(이하 “을” 이라 한다)와 창업에 따른 권리 및 의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갑”에 소속된 “을”의 교수창업(겸직)에 대하여 “갑”이 이를 허락함과 동시에 이에 따르는 “갑”과 “을”의 권리 및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갑” 및 “을”의 사회적·경제적 성과향상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기본방침)

“갑”과 “을”은 신의를 가지고 교수창업(겸직)에 대한 관계법령과 “갑”의 제규정 및 본 협약서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신분유지)

“을”은 창업 승인일 이전의 신분을 계속 유지하며, 창업에 따른 신분변동에 대하여는 “갑”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창업기간)

창업기간은 ○○○○년 ○○월 ○○일로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창업기간 종료 1개월 이전에 교수창업규정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복무)

- ① “갑”은 “을”에게 제4조의 창업승인기간 동안 겸직 근무를 허락한다.
- ② “을”은 위의 겸직 기간 동안 강의, 학생지도 및 수탁 받은 연구를 창업 이전과 동일하게 정상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③ “을”은 제4조 단서에 따라 창업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기간 동안 “갑”의 교수창업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 ① 교수창업기업에서 “을”이 단독 혹은 연대 참여하여 획득한 연구성과(지식재산권 등)는 “을”이 교원의 지위에서 직무발명한 것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갑”의 소유로 하며 “갑”은 본교 지식재산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 ② “갑”은 “을”이 단독 혹은 연대 참여하여 획득한 지식재산권(출원 포함)에 대하여 “을”에게 실시권을 부여한다.
- ③ 제2항의 실시권이라 함은 특허법 및 “갑”의 교수창업규정상의 실시권을 말한다.
- ④ 제2항의 실시권은 원칙적으로 통상실시권으로서 그 허용 기간은 “갑”이 승인한 창업 기간으로 하며, 통상실시권에 따른 등기설정은 하지 아니한다. 또한 기업의 매각, 인수합병, 대표이사 변경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을”은 반드시 “갑”과 제1항의 실시권에 대한 검토 및 합의를 완료한 후 관련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 ⑤ “을”이 지식재산권을 실시함으로써 인하여 “갑”과 제3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이로 인한 “갑”의 경제적 부담 및 연대참여한 발명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발명 보상 등은 “을”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을”의 의무)

- ① “을”은 교수창업(겸직)을 수행함에 있어 대학 및 소속스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 정상적인 교수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
 2. 인적 피해
 3. 금전적 피해
 4. 대학과 스쿨의 정상적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및 명예를 실추하는 행위
- ② “을”은 제출서류의 ‘창업시 대학에의 재정적 기여 계획서’에 의거하여 “갑”에게 재정적 기여를 실시한다.
- ③ “을”은 창업승인일로부터 3년 내에 “을”이 보유한 주식의 5%(단주는 1주로 처리한다)를 산학협력단에 무상 증여하거나, 보유한 주식 5%에 상응하는 기술료를 산학협력단에 납부한다. 단, 주식회사가 아닐 경우 3년 이내에 반드시 주식회사로 전환하여야 하며, 해당 주식 또는 기술료는 주식회사로 전환할 시 납부한다.)
- ④ “을”은 교수창업기업의 매 회계연도 마감 후 부가세확정 신고일 이후 1개월 이내에 교수창업기업 **당기순이익의 5%**를 기술료로 산학협력단에 납부한다.
- ⑤ 위 제4항에 명기된 기술료 납부 기준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협약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다.
- ⑥ “을”은 창업기업의 총 발생주식 산정에 대한 제 증빙자료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갑”이 요

청하는 경우 “갑”이 지정한 회계법인의 실사에 응하여야 한다.

- ⑦ “을”은 창업일 이후 자본의 변동이 있을 경우 자본 변동일 10일 이전에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매각·인수합병 및 대표이사 변경 등의 경우 교수창업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⑧ “을”은 벤처기업을 창업한 경우 창업승인 후 1년 이내에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여 국가에서 인정하는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 ⑨ “을”은 창업승인 후 1년 이내에 특허출원과 기술이전 등 연구성과를 창출 및 활용하는 활동을 하여야 한다.
- ⑩ “을”은 본연의 직무(교원)로서의 윤리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 ⑪ “을”은 교수창업규정의 제반사항을 준수하기로 한다.

제8조(사업수행에 관한 보고)

“을”은 본 협약체결 후 매년 1분기 이내에 전년도 사업수행에 관한 경과 및 성과를 “갑”에게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갑”이 필요로 하는 관계자료의 제출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물의 관리 및 설치·변경)

- ① “을”은 “갑”의 시설관리에 공동참여 의식을 가지고 건물 내의 공용 및 개인재산을 보호하며, 제반 공동시설의 유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② “을”은 목적물 내부에 칸막이 및 기타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갑”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허용 범위 내에서 설치·변경할 수 있다.
- ③ 창업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해지되는 경우 “을”은 사용공간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제10조(물품의 반출입)

- ① “을”은 인화물, 폭발의 위험이 있는 물품을 반입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반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용기 등 위험방지시설을 갖추고 “갑”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반입할 수 있다.
- ② “갑”은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을”에게 소독 및 방역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안전관리)

“을”은 실험실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된 제규정 및 안전설비의 사용법을 숙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준수하여야 한다.

- ①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② 대학에서 실시하는 안전 관련 교육에 참가하여야 한다.

③ 기타 “갑”이 안전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는 시설관리 책임이 있는 기관의 방화 관리 등 관련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보험가입)

“갑”은 교수창업(검직)에 따른 공간사용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을”에게 관련 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보험료를 “을”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13조(별도 비용의 부담)

① “을”은 “을”의 필요에 의해 “을”이 설치한 시설 및 내부기자재 등으로 인한 공과금의 지급을 부담한다.

② “갑”은 “갑”이 제공하는 공용기자재 및 장비, 정보통신망, 사용공간 등에 대하여 그 이용료를 “을”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갑”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조(표시물의 게시)

① “을”의 사업상 표시물은 “갑”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게시할 수 있다.

② “갑”은 표시물 게시규격 등을 작성하여 “을”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을”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면책)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을”의 사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갑”은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6조(협약내용의 해지 및 변경)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을”과의 협약을 해지하고, 교수창업(검직)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창업 및 사업전망이 현저히 불투명하거나 승인을 득한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창업기업의 활동이 “갑”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교육과 연구수행에 현저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을”이 협약내용을 불이행 하거나 “갑”의 제규정과 교육관련 법령 및 기타 법령 등을 위반하는 경우

② “갑”은 협약의 해지 및 승인의 취소를 위하여 “을”에게 사유 및 예정일을 명시하여 예정일 20일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을”이 협약해지 및 승인취소 예정일을 통보 받은 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갑”은 제공하는 모든 지원을 중단하고 그에 상응하는 법률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④ 본 협약내용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갑"과 "을"의 상호 합의 하에 예외적으로 변경 가능하다.
- ⑤ 대학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대학 제규정과 교육 관련 제반 법령에 의거한다.

제17조(변경사항 통지 의무)

"을"은 사업 및 연구과제 내용의 변경 등 중요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갑"은 이에 대한 승인 여부를 서면접수 후 10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18조(권리·의무 승계의 제한)

"을"은 "갑"의 사전동의 없이 이 협약에 의한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없다.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쌍방이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주소: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청강가창로 389-94

성명: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총장 (인)

"을"

주소:

성명: ○○○○○스쿨 ○○○교수 (서명)

생년월일: :